

環境保全法令

이런 점이 궁금하다 <연재Ⅲ>

이 質疑·回信集은
'86년 12월 31일 法津 제3903号로 개정된
環境保全法の 제분야에 대하여 同法 개정 이후
'88년 3월 7일까지 環境庁에 관계기관과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된 사항을 庁의 관계부서가 回信한 내용으로
環境保全法令의 순서에 따라 수록한 것이다.

目 次

- | | |
|--------------------------|----------------------|
| 1. 環境영향평가 | 13.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
| 2. 배출시설 | 14. 위반 회수별 부과계수 |
| 3. 배출허용기준 | 15. 배출부과금 부과와 행정형벌병과 |
|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16. 명령이행보고 및 확인 |
|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17. 오염물질 측정 |
| 6.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18. 사업장의 종별구분 |
| 7. 방지시설의 설치 | 19. 배출시설 관리인 |
| 8. 공동방지시설 | 20. 비산분진규제 |
| 9. 환경기술감리 | 21. 방지시설 업 |
| 10. 배출시설의 설치조사 및 시험가동 | 2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 11.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 | 23. 경과 조치 |
| 12. 개선명령과 개선계획서 | |

7. 방지시설의 설치

가. 防止施設의 任意設置·가동시의 處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釜山 지도 31602-808('87.7.11)

回信: 大管 31720-7539('87.8.3)

2. 質疑內容

事業者가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아 排出施設 만을 설치가동하다가 數年이 지난후 防止施設을 監理도 得하지 않고 任意 設置 가동할 境遇 無許可施設로 볼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지 않으면 無許可 排出施設로 措置할 수 없다.

4. 理由

事業者가 適法하게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 가동하다가 數年이 지난後 排出許容基準을 遵守하기 爲하여 防止施設을 設置·가동하거나 設置된 防止施設의 効率이 低下되어 이를 代替·가동한다 하더라도 同 排出施設을 無許可 排出施設로 볼 수 없으며, 이미 設置된 防止施設로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排出許容基準 以下로 處理하고 있다면 어떠한 措置(排出賦課金 賦課등) 등을 命할 수 없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 및 第15條의 2, 同法 施行令 第16條

나. 寫眞 및 ฟิล름現像施設에서 排出되는 廢液의 廢水委託處理 指定與否 및 廢水와 液狀廢棄物의 區分 基準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釜山 計劃 02101-1948('87.11.2)

回信: 水管 31814-11602('87.12.5)

2. 質疑內容

寫眞處理施設 및 病院施設의 X-Ray 필름現像施設에서 排出되는 세척수가 아닌 廢液을 委託處理하고자 할 境遇, 아래 事項을 質疑하오니 回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特定有害物質 또는 重金屬이 含有된 廢수로

서 1日 廢水排出量이 5m³以下인 境遇 環境廳長의 廢水委託處理指定을 받아야 하는지?

② 廢液을 廢棄物로 區分하여 産業廢棄物處理業者에게 委託 處理하여야 하는지?

③ 廢水와 液狀廢棄物의 區分 基準은?

3. 回信內容

特定有害物質 또는 重金屬이 含有된 廢水로서 1日 排出量이 5m³以下인 廢水를 委託處理하고자 할 境遇에는 廢水委託處理 指定을 받아야 하

別表; 廢水와 産業廢棄物의 區分 基準

	廢 水	產 業 廢 棄 物
區分基準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廢水排出施設에서 發生되는 汚染物質로서 물이 含有된 液體狀의 것	特定有害 産業廢棄物 또는 半固體上의 汚染된 物質 수소이온 濃度指 數가 2.0 以下인 것 또는 12.5 以上인 것 環境保全法 第15條의 規定에 의 하여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은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固體上 또는 半固體上의 汚泥類 (무기성 汚泥포함) 廢 油 發生工程에서 直接 물이 追加되지 않은 純粹廢油 流水分離器에 의 하여 1次 分離된 後의 廢油
管理(處理)時 適用法令	環境保全法	廢棄物管理法
適用範圍	1. 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된 物質의 區分에 한함. 2. 海洋汚染防止法에 依한 埋立排出 및 海域排出時는 適用안됨.	

며, 廢水와 産業廢棄物의 區分 基準은 別表와 같다.

4. 理由

廢水の 處理者 指定에 관한 規定

다. 防止施設 設置免除 承認을 받은 排出施設의 管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釜山 지도 31720-516('88.3.12)

回信: 大管 31720-2301('88.3.17)

2. 質疑內容

① 防止施設 設置義務를 免除받은 排出施設의 設置完了後 確認調査 및 시험가동절차는 免除받지 못한 境遇와 어떻게 다른가?

② 防止施設 設置義務를 免除받은 排出施設의 境遇라도 事後 確認檢査를 爲하여 事業者에게 環境汚染工程試驗法에서 定하는 汚染物質 測定施設을 設置하도록 할 수 있는지?

③ 同 設置義務를 免除받은 排出施設도 自家測定을 實施해야 하는지? 또한 同 排出施設이 操業開始後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한 事實이 밝혀진 境遇 排出賦課金 賦課 및 防止施設 設置를 命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① 免除받은 排出施設을 設置 完了한 後의 確認調査 및 시험가동은 免除받지 않은 排出施設의 境遇와 同一하고,

② 防止施設 設置義務를 免除받은 排出施設이라도 同 施設에서 나오는 汚染物質을 測定할 수 있도록 測定施設을 設置하게 할 수 있으며,

③ 自家測定은 省略할 수 있다. 免除받은 排出施設이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한 境遇 排出賦課金 賦課 및 防止施設 設置命令 모두 可能하나, 防止施設 設置命令은 防止施設 設置義務 免除 承認을 取消한 後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의 2 및 第16條, 同法 施行規則 第24條 第27條 및 第37條(別表8)

다.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 以外の 者가 設計·施工할 수 있는 防止施設의 範圍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서울 計劃 31602-1554('87.8.25)

回信: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許可當時 施設의 容量 또는 容積의 20% 以內의 增設, 代替 또는 改善이라 함은 事業場內 大氣, 水質, 騒音·振動 防止施設 全體의 20% 以內인지?

個個施設의 20%以內인지?

3. 回信內容

分野別(大氣, 水質, 騒音·振動)單位 防止施設의 容量 또는 容積을 基準으로 한 比率이다. 다만, 單位防止施設이 區分되지 않는 境遇에는 分野別 全體 防止施設의 容量 또는 容積을 基準으로 한 比率로 한다.

4. 理由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함에 있어서 各 排出施設別로 單位防止施設을 設置하도록 하여 許可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21條

8. 공동방지사설

가. 共同防止 加入事業場中 倒産된 事業者에게 賦課된 排出賦課金の 徵收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大邱環境 31631-24908('87.12.9)

回信: 水管 31630-12118('87.12.19)

2. 質疑內容

共同防止施設事業場(共同防止 施設을 1個業體로 看做)에 排出賦課金を 부과한 後 共同防止施設事業場 構成業所中 1個業所가 倒産하였을 경우 1個業所의 負擔金額(2個業所로 構成되어 있을 경우 50%)만 納付도록 하고 倒産事業場에 該當되는 負擔金은 國稅徵收法에 의하여 徵收가 可能한지?

3. 回信內容

排出賦課金 分擔問題는 共同防止施設의 運營에 관한 規約에 따라 相互間에 解決하여야 할 事項이다.

4. 理由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事業者는 當該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代表者를 두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代表者는 共同防止施設의 運營等 諸般事項에 대한 責任을 져야하므로 排出賦課金이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 條의 3, 同法 施行規則 第 22 條 및 第 23 條

9. 환경기술감리

가. 技術監理 除外對象施設 判定時의 增設判斷 基準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原州指導 36122-685('87.9.4)

回信 : 法務 02101-9478('87.9.25)

2. 質疑內容

環境技術監理 除外對象 施設中 “汚染物質 또는 排出가스량이 당초 排出施設 設置許可時마다 1 할미만 增加하는 경우”에서 設置許可時의 排出施設의 基準을 單位工程(排出口)을 基準으로 하는지?

3. 回信內容

排出施設의 基準은 單位排出施設(工程)別 防止施設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

4. 理由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는 事業場 單位의 許可가 아닌 排出施設別 許可이므로 許可받은 單位排出施設(工程)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令 第 16 條의 2

나. 法改正으로 新規로 排出施設이 되는 既存施設의 許可時 技術監理節次 省略可能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울산환협 264-187('87.9.19)

回信 : 水管 31813-9458('87.9.28)

2. 質疑內容

從前에는 排出施設에 해당되지 않고 既 設置되어 가동해 오던 施設이 法改正 또는 其他 事由로 排出施設로 新規指定된 경우, 經過措置規定에 의하면 法改正日로부터 3月以內에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得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런 경우의 許可申請時에도 처음으로 排出施設을 設置할 때와 同一한 環境廳長의 技術監理 節次를 거쳐야 하는지?

3. 回信內容

技術監理節次를 거쳐야 한다.

4. 理由

排出施設 設置許可時 環境技術監理對象 施設의 경우에는 반드시 同 監理團의 技術檢討를 받아 許可하도록 하고 있는 바, 施行規則 改正前에 既 設置된 施設이라 할지라도 當該 施設을 改正된 環境保全法規上의 排出施設로 許可함에 있어서는 同 法規에서 定하고 있는 許可節次 規定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 條,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2

다. 新規로 指定된 排出施設이 既存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을 共同으로 使用할 境遇 技術監理 節次 省略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동해프(주) 환경第 790-188('87.10.17)

回信 : 水管 31814-10739('87.11.10)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 3 條(別表2)의 改正에 의하여 새로운 排出施設로 指定된 淨水施設, 廢가스 세척시설로부터 나오는 廢液이 既 設置되어 있는 排出施設의 防止施設(廢水處理場)에 함께 인입되어 工場建設 當時부터 지금까지 正常處理되어 왔는바, 이 경우에도 새로 指定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監理 節次를 거쳐야 하는지?

3. 回信內容

技術監理節次를 거쳐야 한다.

4. 理由

排出施設 設置許可時 環境技術監理對象 施設의 경우에는 반드시 同 監理團의 技術檢討를 받

아 許可하도록 하고 있는바, 施行規則 改正前에 既 設置된 施設이라 할지라도 當該 施設을 改正된 環境保全法規上의 排出施設로 許可함에 있어서는 同 法規에서 定하고 있는 許可節次 規定이 準용되어야 할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 15 條, 同法 施行令 第 16 條 및 第 16 條의 2

다. 新規로 指定된 排出施設이 既存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을 共同으로 使用할 境遇 技術監理 節次 省略 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동해프(주)환경 第 790-088('87.10.17)

回信 : 水管 31814-10739('87.11.10)

2. 質疑內容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 3 條(別表 2)의 改正에 의하여 새로운 排出施設로 指定된 淨水施設 廢가스 세척시설로부터 나오는 廢液이 既 設置되어 있는 排出施設의 防止施設(廢水處理場)에 함께 인입되어 工場建設 當時부터 지금까지 正常處理되어 왔는바, 이 경우에도 새로 指定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監理를 받아 設置許可를 받아야 하는지?

3. 回信內容

새로이 指定된 排出施設의 規模등이 環境技術監理 對象施設에 該當되면 技術監理節次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새로이 指定된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廢水の 增加量이 既 設置되어 있는 排出施設 設置許可時의 防止施設 處理能力以內라면 다시 技術監理를 받을 必要는 없다.

4. 理由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함에 있어서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種類·規模 등이 環境技術監理 對象施設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許可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排出施設로 되는 許可對象施設이 環境廳 告示 第 87-23 號에서 정한 施設의 種類·規模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받아 許可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廢水를 包含하여 技術監理를 받아 기허 設置許可된 防止施設에서 同 防止施設의 增設없이 處理한다면 二重으로 環境技術監理를 받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다시 技術監理를 받을 必要가 없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令 第 16 條의 2, 環境廳 告示 87-23 號

라. 排出施設 變更申告對象施設의 變更時 技術監理對象 該當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計劃 31602-1554('87.8.25)

回信 :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排出施設 變更申告對象 施設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環境廳 告示 第 87-23 號에 의한 技術監理 對象施設인 경우 技術監理를 받아야 하는지?

3. 回信內容

技術監理對象이 아니다.

4. 理由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施設로서 告示 第 87-23 號에 해당되는 施設에 限하여야 하므로 排出施設 變更申告對象施設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技術監理對象이 될 수 없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令 第 16 條 및 第 16 條의 2

마. 許可機關이 直接 技術監理를 申請하는 境遇의 處理節次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 서울 計劃 31602-1544('87.8.25)

回信 :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事業者가 直接 技術監理를 받지않고 變更許可를 申請하는 경우 許可機關에서 環境廳長에게 技術監理를 申請토록 되어 있으나, 現行 規定上 許可 또는 變更許可 申請書類는 1 部만 添附토록 하고 있어 許可機關에서 環境廳長에게 技術檢討를 申請할 여분의 寫本이 없으므로 事業者로 하

여금 直接 技術檢討를 받도록 하여도 可能한지의 여부와 이때의 行政節次는?

3. 回信內容

事業者에게 技術監理申請에 必要한 部數만큼 追加로 提出받아 許可機關이 申請하는 方法과 事業者로 하여금 技術監理를 直接 받도록 하는 方法이 있으며, 이 두가지 方法中 事業者가 願하는 바에 따라 處理하여야 할 것임.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令 第16條 및 第16條의 2

10. 배출시설의 설치조사 및 시험가동

가. 排出施設 變更許可 및 變更申告에 對한 시험가동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原州 指導 36122-685('87.9.4)

回信：法務 02101-9478('87.9.25)

2. 質疑內容

排出施設 變更許可 및 變更申告事項에 대하여도 시험가동 命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험가동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 變更部分에 限定하는지? 아니면 變更部分을 包含, 全體工程을 다 包含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變更許可의 경우에는 變更許可施設을 包含하여 全體工程에 대하여 시험가동명령을 하여야 하며, 變更申告의 경우는 시험가동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4. 理由

排出施設의 設置調査 및 시험가동은 許可(變更許可 包含) 받은 排出施設을 設置完了한 경우, 許可한 事項과 부합여부를 調査하여 調査結果 設置完了된 施設이 許可한 事項과 부합될 경우에 一定期間의 範圍안에서 시험가동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이는 許可받은 全體工程을 다 包含하여 시험가동을 命하여야만 가동시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全體가 排出許容基準을 遵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施行規則 第26條

나. 시험가동기간중에 提出한 改善計劃書의 處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原州 指導 36122-685('87.9.4)

回信：法務 02101-9478('87.9.25)

2. 質疑內容

시험가동중에 있는 事業者가 防止施設 改善計劃書を 提出할 경우 이를 處理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處理할 수 없다.

4. 理由

改善計劃書는 適合判定을 받아 조업중인 排出施設이 排出許容基準 등을 위반하여 改善命命을 받은 경우에 提出하는 것이므로 시험가동 期間中에는 이를 提出할 수 없다. 따라서 시험가동중 事業者 스스로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改善하고자 할 때에는 排出施設 設置許可 官廳에 提出된 排出施設 設置完了 申告書 및 檢査申請書を 철회하고,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適合하게 改善補完한 후 排出施設 設置完了申告와 檢査申請을 다시 하여야 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6條, 同法 施行規則 第25條 내지 第27條, 第30條.

다. 시험가동기간중 非正常運營者에 대한 處理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原州 指導 36122-685('87.9.4)

回信：法務 02101-9478('87.9.25)

2. 質疑內容

시험가동 命命中에 있는 者가 防止施設을 非正常 가동시 行政刑罰을 課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行政刑罰을 課할 수 없다. 다만, 適合判定없이 조업행위를 目的으로 가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理由

시험가동기간은 正常的인 조업통보를 하기전에 排出許用基準 유지 可能여부를 檢査하는 단계이므로 防止施設을 비정상가동한다 하더라도 行政

刑罰을 課할 수는 없다. 다만 시험기간중 조업행위를 目的으로 排出施設을 가동하면서 防止施設을 非正常 가동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汚染物質을 排出한 경우에는 排出賦課金 賦課 및 行政刑罰을 課할 수 있을 것이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6條, 第16條의 2, 第20條, 第21條 및 第66條, 同法 施行規則 第24條 내지 第27條

11.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

가. 自進申告者의 排出濃度 및 排出量 算定基準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大邱 環境 31813-20501('87.10.12)

回信: 大管 31632-10323('87.10.28)

2. 質疑內容

自進申告者에 대한 汚染物質 排出量 및 排出濃度の 適用을 自進 申告書上的 排出量 및 排出濃度を 基準으로 하여 適用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適用할 수 없다.

4. 理由

排出賦課金은 반드시 檢査機關이 採取·分析한 汚染物質의 排出量 및 濃度を 基準으로 하여 算定하여야 하므로 事業者의 申告書에 의한 算定은 認定되지 아니한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24條, 同法 施行令 第17條의 9 및 第18條

나. 自進申告者에 對한 排出賦課金 賦課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大邱 環境 31813-20601('87.10.12)

回信: 水管 31632-10323('87.10.28)

2. 質疑內容

自進申告書上的 非正常運營 開始日에 確認結果 排出許容基準을 100% 초과하고 改善完了 申告日에 確認結果 排出許容基準을 50% 초과하고 있는 경우의 排出賦課金の 기산일은 汚染物質 採取日인지?

自進申告書上的 非正常運營日인지?

3. 回信內容

自進申告者의 排出基間 算定은 1次 賦課時는 改善計劃에 明示된 非正常運營 開始日 翌日로부터 改善完了 申告日까지 산정하고 2차부과금 부과는 改善完了 申告에 의한 檢査 確認日 翌일부터 事實上 改善完了 日까지이다. 이 경우 二次賦課金 賦課는 無申告者의 경우와 같이 改善命令을 하고 위반 회수벌 賦課係數도 1回 加算하여야 한다.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17條의 9

다. 自進申告와 變更許可(申告)와의 關係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서울 計劃 31602-1554('87.8.25)

回信: 大管 31720-10158('87.10.23)

2. 質疑內容

自進申告時 改善期間中 排出施設(防止施設)을 變更하여야 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變更許可申請(또는 申告)도 同時에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防止施設變更許可申請書 檢討結果 改善期間中 防止施設의 非正常運營이 不可避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事業者로 하여금 自進申告토록 勸誘 또는 要求할 수 있는지 여부?

3. 回信內容

施設變更이 있는 경우 變更許可申請(또는 申告)을 同時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非正常運營이 不可避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自進申告 條項을 주지시키고 自進申告를 勸誘할 수 있다.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5條, 同法 施行令 第17條의 5, 同法 施行規則 第17條 및 第18條

12. 개선명령과 개선계획서

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 運轉未熟 事例 및 改善期間 指定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全南 環境 31824-30550('87.10.14)

回信: 水管 31814-10911('87.11.16)

2. 質疑內容

改正된 施行規則 第30條에 의하면 改善하여야 할 事項이 排出 및 防止施設의 運轉未熟 등의 경우에도 改善命令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運轉未熟 등의 事例 및 이에 대한 改善期間은 어떻게 指定하여야 하는지?

3. 回信內容

○ 運轉未熟 등의 事例

— 防止施設은 가동되나 氣象影響으로 基準超過(生物化學的處理時 벌킹 현상등)

— 藥品投入 過多등 運轉方法 未熟으로 基準超過

— 生物化學的 處理時 不注意로 인한 毒性廢水 流入으로 基準超過등

○ 改善期間의 指定은 運轉未熟등의 事例에 따라 防止施設의 性能이 원상회복되어 정상가동이 가능한 期間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定하여야 할 것임.

4.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施行規則 第30條

나. 改善命令의 遲延에 따른 排出賦課金 賦課期間 短縮可能與否

1. 質疑 및 回信根據

質疑: 忠北 環境 31720-19030('87.11.26)

回信: 水管 31630-11904('87.12.14)

2. 質疑內容

檢察廳 主管으로 廢水 排出業所에 대한 合同團束을 實施하고 排出許容基準을 超過 排出한 業所를 적발하여 行政機關에 行政措置토록 通報한바, 이에 대하여 改善命令함은 勿論이나 이에 수반되는 排出賦課金 賦過期日 算定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가. 事件 進行經緯

○ 採水日時: '87.10.23 (淸州 地方檢察廳 合同團束 實施)

○ 廢水檢查依賴: '87.10.23 (檢察→保健研究所)

○ 廢水檢查結果通報: '87.11.3 (保健研究

所→檢察)

○ 事件搜查: '87.11.4 - 11.18 (檢察 → 罰金刑 終結)

○ 廢水期準 超過業所 行政措置 通報: '87.11.19 (檢察→道廳)

○ 改善命令: '87.11.21 (道廳 및 該當市·郡)

나. 賦課期間短縮 可能與否

○ 該當業體가 改善命令을 받고 改善計劃書와 改善履行完了 申告書를 提出하면서 檢察搜查過程에서 排出許容期準을 초과한 事實을 인지하고 改善命令日 以前에 이미 任意改善하였다는 理由로 改善命令日字보다 改善期間 및 改善完了日을 소급하여 申告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行政命令遲延 責任이 國家에 있음으로 改善命令과 同時 改善計劃書 및 完了申告書가 同時에 接受되었다면, 그리고 放流水(廢水)를 採水, 環境汚染度를 檢査하여 排出許容期準 以內이었다면 行政命令이 지체된 期間에 대하여 排出期間算定時 除外할 수 있는지?

3. 回信內容

改善履行完了日을 소급하여 申告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遲延된 期間도 賦過期間(超過汚染物質 排出期間)에 算入하여 排出賦課金を 賦課하여야 한다. 그러나 行政處分機關과 合同으로 단속한 경우에는 排出許容期準違反 여부를 신속히 把握하여 措置하였어야 할 것이다.

4. 理由

事業者가 檢察 搜查過程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排出許容期準을 超過한 것을 事前 인지하고 이를 改善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事業者의 임의개선에 불과하며, 環境廳長이 指定하는 檢査機關이 同 改善事實(汚染度등 包含)을 公式的으로 確認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認定하여 處理할 수는 없다.

5. 參照條文

環境保全法 第19條의 2, 同法 施行令 第17條의 9

< 다음호에 계속 >